



Commission On
Human Rights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22 Reade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06-7450 | 212-416-0197
www.nyc.gov/site/cchr

2/6/25

이민 상태 및 출신 국가에 따른 보호

뉴욕시에서는 고용, 주택 공급 시와 상점, 병원,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실제 또는 인지된 이민 상태나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권리는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직장 동료, 임대주 등 주택 공급자가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해 겁주거나 굴욕감을 주고 비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굴욕감을 주고 모욕할 의도로 사용하는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상태를 이용해 괴롭히거나 겁주려고 임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고,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고용주는 연방법에 따라 지원자에게 반드시 노동 허가를 증명할 특정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상태나 출신 국가에 관해 추측한 내용 때문에 노동 허가를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고용주가 노동 허가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지원자의 이민 상태나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별개/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주 또는 기타 주택 공급자가 이민 상태나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주택을 판매하고 임대하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약관, 조건, 특권을 내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임대주 또는 기타 주택 공급자가 이민 상태나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임대주 또는 기타 주택 공급자가 이민 상태나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임차인에게 수리해 주기를 거부하거나 열악한 주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임대주 또는 기타 주택 공급자가 이민 상태를 기반으로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겁주려고 ICE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식당, 상점, 병원, 기타 공공시설에서 이용자의 이민 상태 또는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억양, 부족한 영어 능력, 다른 언어 사용 때문에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직장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뉴욕시 인권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에 불만을 제출하는 등 차별적 관행에 대해 조치한 사람을 벌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인이 이민 상태, 출신 국가 때문에 또는 기타 보호 대상 클래스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212) 416-0197로 위원회에 연락하여 차별을 신고해 주십시오.

